

대법원 2019. 2. 14 선고 2018다278719(본소), 2018다278726(반소) 판결 [공사대금 등
청구의소, 부동산인도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상고인

1. 주식회사 A
2. B 주식회사
3. 주식회사 C
4. 주식회사 D
5. 주식회사 E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

담당변호사 박영래, 김영진

피고,피상고인

1. F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름

담당변호사 박은주, 오자현, 이지연, 최호석, 한장호

2. 주식회사 G
3. 주식회사 H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

담당변호사 김재권, 안성규, 이환희, 정진규

피고(반소원고), 피상고인

주식회사 I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

담당변호사 김재권, 안성규, 이환희, 정진규

판 결 선 고 2019. 2. 14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3. 선고 2018나2006820(본소), 2018나 2006837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uC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

신탁법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 주식회사(이하 '피고 F' 이라고 한다) 가이사건 시행사의 이행보조자, 이행대행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이 부분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.

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들 주장과 같은

사정만으로써 피고 F이 이 사건 시행사의 이행보조자, 이행대행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.

원 심 판 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,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, 3점에 관하여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F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관한 이 사건 시행사의 지위나 법적 책임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F이 위 용역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.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와 신탁행위 해석, 계약인수,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, 판단을 누락하거나,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3.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

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은 가정적, 부가 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, 이에 관한 이 부분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(주 심) 대법관 김선수